
Policy and Law Report _Vol.160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0.31~ 11.6) -

November 7,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환경부	•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환경부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함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임 *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 418만톤 ('19년) → 492만톤 ('21년, 잠정) (자발적협약 참여 14개 카페·4개 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용량) 연간 약 7억8천만개 ('17-'19 평균) → 약 10억2천만개 ('21년)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강화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1.12.31) ※ (주요 내용)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종합소매업 등, 유상판매→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 사용금지),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환경부는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이 확대·강화되는 이번 조치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임 참고 1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 파란색은 '22.11.24일 시행 <table> <tr> <th>1회용품</th><th>업종</th><th>준수 사항</th></tr> <tr> <td>1. 접시 · 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2. 컵(종이, 합성수지 · 금속박 등)</td><td>•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td><td>금지</td></tr> <tr> <td>3. 합성수지용기</td><td>•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td><td>금지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td></tr> </table>	1회용품	업종	준수 사항	1. 접시 · 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2. 컵(종이, 합성수지 · 금속박 등)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3. 합성수지용기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금지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2022-11-01
1회용품	업종	준수 사항									
1. 접시 · 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2. 컵(종이, 합성수지 · 금속박 등)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3. 합성수지용기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금지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부처	내용			일시
	4. 나무젓가락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6. 플라스틱 수저 · 포크 · 나이프 7.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8. 플라스틱 빨대 · 젓는 막대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9. 광고선전물 (신문 · 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대규모점포 •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금지	
	10. 면도기 · 칫솔 · 치약 · 샴푸 · 린스	• 목욕장업	판매(무상 금지)	
	11. 비닐 봉투 · 쇼핑백*	•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금지	
		•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판매(무상 금지)	
	12.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등)	판매(무상 금지) (일회용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13. 우산 비닐	• 대규모점포	금지	

부처	내용	일시																													
	참고 2 변경되는 제도 비교표 <table><tr><th colspan="2">구분</th><th rowspan="2">현행</th><th rowspan="2">11.24일 이후</th></tr><tr><th>1회용 품목</th><th>대상 업종</th></tr><tr><td>종이컵</td><td>식품접객업①, 집단급식소②</td><td>-</td><td>매장 내 사용금지</td></tr><tr><td>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td><td>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td><td>-</td><td>매장 내 사용금지</td></tr><tr><td rowspan="2">비닐봉투</td><td>종합소매업③ 등</td><td>무상판매 금지</td><td>사용금지</td></tr><tr><td>음식점, 주점업</td><td>-</td><td>무상판매 금지</td></tr><tr><td>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td><td></td><td>무상판매 금지</td><td>사용금지</td></tr><tr><td>우산비닐</td><td>대규모점포⑤</td><td>-</td><td>사용금지</td></tr></table> ※ 대상 업종별 매장 예시 ① 식품접객업 :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② 집단급식소 : 학교, 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1회 50명 이상) ③ 종합소매업 : 편의점, 면세점, 슈퍼마켓(165m2 미만) 등 ④ 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⑤ 대규모점포 :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구분		현행	11.24일 이후	1회용 품목	대상 업종	종이컵	식품접객업①, 집단급식소②	-	매장 내 사용금지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	종합소매업③ 등	무상판매 금지	사용금지	음식점, 주점업	-	무상판매 금지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무상판매 금지	사용금지	우산비닐	대규모점포⑤	-	사용금지	
구분		현행	11.24일 이후																												
1회용 품목	대상 업종																														
종이컵	식품접객업①, 집단급식소②	-	매장 내 사용금지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	종합소매업③ 등	무상판매 금지	사용금지																												
	음식점, 주점업	-	무상판매 금지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무상판매 금지	사용금지																												
우산비닐	대규모점포⑤	-	사용금지																												

부처	내용	일시
고용 노동부	• 특별연장근로 관련 규제 개선 즉시 추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하기로 함 지난 10/27(목)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해외 건설업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와 함께,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명료하게 개선’하는 내용임 이상 3건에 대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2022.10.31.부터 시행할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 국내와 현지의 법이 이중 적용되는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국내와 환경과 여건이 다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외 건설공사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에 대해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 해외건설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건설업체는 발주처 대응 등 현지 업체와의 협업(69.2%), 기후조건(50%)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동의 모래폭풍과 동남아의 雨期, 몽골 등 1년의 절반 가까이 땅이 얼어 있는 등 현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호(돌발상황 수습) 및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할 계획임 ② 연간 활용 기간(90일)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 마련 -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변경 절차를 마련하여 최초 인가받은 일수가 아닌 실제 사용한 일수를 연간 사용 일수로 산정 - 제3호(돌발상황 수습) 및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는 1년에 90일 한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인가 이후에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 등이 있어도 최초 인가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연간 활용 가능한 일수를 산정할 때 최초에 인가받은 기간을 실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한 일수로 산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 이에, 최초 인가받은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합리화	2022-10-31

부처	내용	일시
	- 인가기간 변경을 하려는 사업장은 최초 인가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실제 특별 연장근로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됨 ③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명료화 -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사후 신청 기한을 동일하게 바꿔 단순화 -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체없이 승인받아야 하며, 사후 신청 기한은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었음 - 이에, 인가 사유 및 기간과 관계없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동일한 사후 신청 기한을 적용하도록 개선	
국토교통부	• 자동차 운행·제작 관련 규제 합리화 중점 추진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22.10.5.~18.)을 거쳐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동차 운행 및 제작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중형자동차 제작시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대형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 - 수소전기차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수소연료 공급(수소탱크→연료전지)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제작 - 친환경차 구매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 일부를 감면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채권 매입 감면기간 종료시기를 `22.12.31에서 `24.12.31까지 연장 ②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 가설건축물 허용 면적 확대 -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에 입지한 택배물류시설 부지 중에서 택배 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를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허용 면적을 100㎡에서 200㎡까지 확대 - 택배물류시설 부지 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경우 종사자 휴게공간 확보를 고려하여, 초과되는 면적의 2% 범위 내에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면적 추가로 허용 ③ 건설공사 부실행위에 대한 벌점 규정과 품질관리지침 개선 - 건설현장 법령 위반시 건설기술인과 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벌점을 같이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벌점측정 기준도 구체화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022-11-02

부처	내용	일시
	- 업체가 건설기술인의 부실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 수행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업체에 한정*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정비 * 현재는 건설기술인에 대해서도 벌점 부과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11.1. 시행)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관리·운영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신용보증할 수 있는 일반 금전채무의 한도를 ‘5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제29조제2항제1호)	2022-11-01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11.4. 시행) 국민체육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만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60호, 2022. 5. 3. 공포, 11. 4. 시행)됨 이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과 회원제·대중형 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액수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7조, 제7조제2항 및 제7조제3항 신설, 제12조제1호, 제13조·제14조·제15조·제21조제1항제1호·제22조제3항 신설 등)	2022-11-0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1.4. 시행) 국민체육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비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60호, 2022. 5. 3. 공포, 11.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978호, 2022. 11. 3. 공포, 11. 4. 시행)됨	2022-11-04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이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종전 대중골프장업의 시설기준 및 행정처분기준을 비회원제 골프장업에 관한 시설기준 및 행정처분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7조 삭제, 제7조의2 신설, 제11조·제12조·제13조 등)	
산업통상 자원부	• 「<u>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u>」 (2022.11.1. 시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공장에 제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국내 사업장을 신설·증설한 것으로 보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제3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2022-11-01
국토 교통부	• 「<u>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u>」 (2023.5.3. 시행 예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10조제1항, 제10조제3항 삭제)	2022-11-02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문화체육 관광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22.10.18.)으로 일부 법 조항이 신설·이동됨에 따라 시행령 상의 인용 조문 및 위탁 사무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 제32조제7항 신설로 기존 제32조제7항이 제32조제8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에 연동되어 있는 인용 조문 변경 (안 제39조) ② 법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제12호2에 진단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 사무가 신설되고 기존 제12호2가 제12호3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 업무위탁 사무에 동 사항을 동일하게 반영 (안 제51조) ※ 의견 제시기간 : 11/4(금)~12/14(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로 제출	2022-11-04
환경부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품목을 고시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 추가 (안 제2조)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을 석탄재, 폐타이어[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 고무분말, 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로 함 ※ 의견 제시기간 : 10/31(월)~11/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생활폐기물과)로 제출	2022-10-3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세계적으로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이용한 미래 식품 원료까지 식품원료 인정대상을 확대·개선하여 신기술 적용 식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류·떡류·과자류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준을 정한 경우 음식점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 확대 (안 제5조제1항) - 세포배양 식품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식품을 식품 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함 ② 식품 관련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시간 등 (안 제52조제2항, 안 제54조제2항) - 신규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의 식품위생교육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완화함 - 신규영업자가 영업시작 전 사전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등록관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③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의 생산실적 보고기한을 현행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함 (안 제56조제1항) ④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개선 (안 별표 14, 별표 25)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창고의 용량이 부족하여 생산한 반제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영업등록관청 관할 구역 외에서도 소재지외 장소에 창고를 설치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함 - 일반음식점에 객실이 설치된 경우 객실내부에 숙박시설과 같은 침대, 욕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보완함 - 집단급식소의 객석시설을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동일사업장 또는 동일소재지 내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⑤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안 별표 17, 별표 24) -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제품의 거래기록 보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개선함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류·떡류·과자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에 당일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 경우	2022-10-3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판매 및 구입한 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당일 생산·당일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도록 함 - 옥외 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를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옥외 영업장에서 조리행위가 가능하도록 함 - 위탁급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위생점검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함 ※ 의견 제시기간 : 10/31(월)~12/1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원격통신 수단을 이용한 이사회 개최를 허용하도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도 반영하여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선거권 행사 (안 1. 제33조, 제35조, 제36조, 2. 제32 내지 34조) - 코로나19 등으로 총회 구성원의 집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생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법 내용을 표준정관례에 반영 ②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한 이사회 개최 (안 1. 제42조, 2. 제40조) - 코로나19 등 대면 이사회 개최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이사회를 개최하여 생협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법 내용을 표준정관례에 반영 ※ 의견 제시기간 : 11/4(금)~11/24(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로 제출	2022-11-04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법제사법위원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에게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관하여 규율되어 있지 않음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나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의 당사자임에도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보험약관이나 보험계약의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곤란하고 적시에 보험사고 발생 통지나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 보험증권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638조의3제3항, 제64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2022-11-01
정무위원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등록 또는 이에 대한 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이자율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되더라도 거래상대방은 여전히 대부계약에 따른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등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그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11조)	2022-10-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1인)」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여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2018년 1,700억원 수준이었던 디지털자산 불법행위 검거규모가 지난해 3조 1,300억원으로 18배 이상 급증하고, 언론보도에서도 디지털자산의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가 빈번하게 다뤄지고 있음 특히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다수 이용자의 대규모 피해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앞당기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급하게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할 필요성과 이유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에 국제적 논의동향과 글로벌 기준 마련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율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이를 보완해가는 점진적·단계적 입법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임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번 제정안에서는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14건의 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반영하였음 그래서 동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디지털자산사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이용자 예치금 보호 등),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 금지, 자율감시(시장감시와 신고의무 부과 등) 책임 등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집중하였음 디지털자산의 발행·상장·공시와 디지털사업자의 진입·영업행위(신의성실 의무,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광고규제 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규율방안은 2023년중 디지털자산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방향을 반영하여 보완하고자 하며, 금융위원회가 추후 이루어질 보완입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내용과 제출시한을 규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지털자산은 기존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를 준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하고, 덧붙여 디지털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시장 등을 정의함 (안 제2조) ② 이용자 예치금의 신탁과 디지털자산의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2022-10-3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③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자기발행 디지털자산 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④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조사권한, 시정명령·영업정지·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 ⑤ 이 법에 의해 금융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⑥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시장 및 사업자를 감독·조사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및 제15조) ⑦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⑧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여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2018년 1,700억원 수준이었던 디지털자산 불법행위 검거 규모가 지난해 3조 1,300억원으로 18배 이상 급증하고, 언론보도에서도 디지털자산의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가 빈번하게 다뤄지고 있음 특히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다수 이용자의 대규모 피해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앞당기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급하게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할 필요성과 이유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에 국제적 논의 동향과 글로벌 기준 마련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율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이를 보완해가는 점진적·단계적 입법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임 이에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이용자 자산 보호(디지털자산사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이용자 예치금 보호 등),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 금지, 자율감시(시장감시와 신고의무 부과 등) 책임 등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규정하고 동법 개정을 통해 이를 집행할 전담조직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2022-10-3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범위를 규정함 (안 제23조의2 신설) ② 디지털자산위원회의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자격과 위원 임기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23조의3 신설) ③ 디지털자산위원회 회의 소집과 위원회의 의결방법, 조직과 규칙제정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23조의4 및 제23조의5 신설) ④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의6 신설) ⑤ 이 법에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한 권한 중 일부를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함 (안 제24조제1항, 제58조, 제61조제1항, 제70조, 제71조)	
	• 「<u>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u>」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자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거래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한하여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의무를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라고 정함 (안 제2조제4호) ②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사이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교류차단장치 도입 의무를 마련함 (안 제4조)	2022-11-0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③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안 제5조) -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④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 (안 제7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분쟁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사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는 합의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 (안 제15조,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교류의 차단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⑥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안 제25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⑦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안 제26조) -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기획재정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비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 애플TV,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내 진출 가속화로 인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각각 2%p씩 상향조정하며, 특례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투자하는 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6)	2022-10-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였음	2022-11-0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그런데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장기간 제한되면서 관광사업 및 항공운송사업이 받은 피해가 막대하고, 더욱이 관련 업계의 중소기업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손실을 입고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해당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정책적으로 장려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광사업 및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출연 또는 출자하는 경우, 그 출연금 또는 출자금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코로나로 인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안 제99조의13 신설)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 원 등 12인)」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어느 익명 게시판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글을 익명으로 게재한 후 어떠한 목적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 글에 마치 다수의 타인이 작성한 것처럼 다수의 댓글을 스스로 게재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음 이러한 사례가 만약 단순히 친목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익명 게시판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이슈에 대한 익명 게시판에서 발견된다면 우리 사회에 자칫 건전하지 못한 여론몰이식의 소모적인 논쟁을 촉발시키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이용자가 익명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어느 이용자가 익명 게시판에서 자신이 게시한 정보에 스스로 댓글을 게시한 때에는 해당 원정보와 해당 댓글의 작성자가 동일하다는 표시를 하도록 조치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5제5항 신설)	2022-10-31
문화체육 관광 위원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4인)」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등 저작물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 분석과정에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의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분석 과정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관련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2022-10-3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한 자동화된 정보분석을 하려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보분석의 목적으로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별도의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정보분석 결과물에 대한 이용 목적을 제한하는 한편,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5조의5 신설 등)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새로운 전기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신사업으로 정의하고, 해당 사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도 사업을 개시하고 전기신사업 약관은 인가없이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사업·구역전기사업 등 전기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음 그런데 최근 전력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생산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의 특징인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에 다시 전력시장,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동 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켜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에 대하여 전기신사업에 포함시켜 동 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 대하여는 전기공급 약관은 신고하도록 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잉여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14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5)	2022-10-3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32인)」 현행법은 기업 간의 납품대금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상생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음	2022-11-0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그런데 교육청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수탁·위탁거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상생결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추가하여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8호의3)	
보건복지 위원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정보통신기술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대면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고, 최근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이러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효용이 확인되어 기존의 대면 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특히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하여 건강을 증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를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18조제1항, 제34조 및 안 제34조의2 신설 등)	2022-11-01
국토교통 위원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코로나19 장기화 전자상거래 증가 등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향후 택배 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배달·택배의 운송수단을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미래 먹거리 산업인 드론, 로봇과 같은 무인배송 수단을 배달·택배에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택배서비스사업과 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을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로봇을 추가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	2022-11-03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별첨1】참조		
국회도서관	11/8(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8호 발간 - 프랑스의 우주폐기물 감축 입법례	
	11/9(수)	「World & Law」 2022-21호 발간 - 우주도 청소가 필요하다고?	
	11/10(목)	「현안, 외국에선?」 제47호 발간 -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	
예산정책처	1/7(월) 14:00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 방향과 주요 쟁점 등 논의	의원회관 1소회의실
입법조사처	11/11(금) 13:30	「데이터 자본주의와 금융소비자 보호」 세미나 개최 - 1세션 : 금융과 소비자 보호 - 2세션 : 금융 소비자 보호규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별첨1] 제400회 국회(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운영위	11/9(수) 10:00	전체회의	- 예산안 등 상정
법사위	11/7(월) 14:00	전체회의	- 예산안 등 상정, 현안보고
	11/9(수)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	- 예산안 등 심사
	11/10(목)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	- 예산안 등 심사
정무위	11/7(월) 14:00	예산결산심사소위	- 예산안 등 심사
	11/8(월) 10:00	전체회의	- 예산안 등 의결, 법안 상정
교육위	11/9(수) 14:00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과방위	11/7(월) 14:00	전체회의	- 예산안 등 상정
	11/8(화)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	- 예산안 등 심사(과기부)
	11/9(수)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	- 예산안 등 심사(방통위)
	11/9(수) 14:00	예산결산심사소위	- 예산안 등 심사(원안위)
	11/10(목) 10:00	전체회의	- 예산안 등 의결, 법안 상정
외통위	11/7(월) 10:00	전체회의	- 예산안 등 의결, 법안 상정
행안위	11/7(월) 14:00	전체회의	- 예산안 등 상정, 현안질의
	11/9(수)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	- 예산안 등 심사
	11/10(목)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	- 예산안 등 심사
문체위	11/7(월) 10:00	전체회의	- 예산안 등 상정
	11/8(화)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	- 예산안 등 심사
	11/9(수) 14:00	전체회의	- 예산안 등 의결
농해수위	11/9(수) 10:00	농림법안소위	- 법안 심사
	11/10(목) 10:00	농림법안소위	- 법안 심사
	11/10(목) 14:00	전체회의	- 예산안 등 의결, 법안 상정
산자위	11/11(금) 10:00	전체회의	- 예산안 등 상정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복지위	11/7(월) 10:00	전체회의	-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
	11/7(월) 14:30	전체회의	- 법안 및 예산안 등 상정 등
	11/9(수)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	- 예산안 등 심사
	11/10(목) 10:00	전체회의	- 예산안 등 의결
환노위	11/8(화) 10:00	고용노동법안소위	- 법안 심사
	11/10(목)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예산안 등 상정
국토위	11/8(화) 14:00	국토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11/9(수) 10:00	교통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11/11(금) 14:00	전체회의	- 예산안 등 상정
예결위	11/7(월) 10:00	전체회의	- 종합정책질의
	11/8(화) 10:00	전체회의	- 종합정책질의
	11/10(목) 10:00	전체회의	- 부별심사(경제부처)
	11/11(금) 10:00	전체회의	- 부별심사(경제부처)
정개특위	11/10(목) 10:00	국회선진화소위	- 법안 심사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1/7(월) 10:00	2022 세계개편안 평가와 해법 -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헤쳐나갈 주춧돌 될 수 있나	김주영·진선미· 이수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11/7(월) 10:00	제6회 재외동포정책포럼 - 한인네트워크와 공공외교	태영호 의원실, 세계한인네트워크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7(월) 14:00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황운하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7(월) 14:00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8(화) 10:00	디지털 유산 승계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허은아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8(화) 10:00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	서영석·최연숙· 강은미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8(화) 14:00	석탄산업 재평가와 가치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이철규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11/8(화) 14:00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 항만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방향	이달곤 의원실, 창원시정연구원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9(수) 09:00	경제는 민주당! :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홍성국·김태년· 김경협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9(수) 10:00	2022년 11월 정책세미나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A급여의 성격과 개혁방향	용혜인 의원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의원회관 5간담회실
11/9(수) 10:00	에너지 정책토론회 -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위한 제언	박수영·홍정민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10(목) 10:00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 2 -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개선 방안	변재일·김영식 의원실, 미디어미래연구소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10(목) 13:30	2022 SW융합클러스터 지역 공동정책 세미나	홍석준 의원실, 국회ICT융합포럼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10(목) 14:00	한국형 횡재세법 쟁점과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	용혜인·이성만 의원실	국회본청 영상회의실
11/11(금) 14:00	대마산업활성화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우원식·김형동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59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10/31(월)	「월간 국회도서관」 11월호 발간	
	11/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7호 발간 - 독일과 일본의 자율주행 레벨4 관련 입법례	
예산정책처	10/31(월)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발간	
	11/4(금)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	
입법조사처	11/1(화)	「이슈와 논점」 - 북한의 전술핵 개발 현황과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	
	11/2(수)	「이슈와 논점」 -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와 유럽의 에너지 안보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백대용 변호사 |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변호사 |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변호사 |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변호사 |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 • 성재열 변호사 |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변호사 |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 • 박건백 변호사 |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 • 나인선 변호사 |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 • 나인경 변호사 |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 • 김은혜 변호사 |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